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17호

2021년 수성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1년 4월 12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근무예정 부서	임용계급	임용 인원	임용 기간	담 당 업 무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장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장	교육지원과	지방사회복지 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2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 전반 - 상담사업, 교육지원 - 위기청소년 지원 - 청소년안전망 운영 등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업무 전반 - 사례발굴 및 관리. 학업지원 -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 복지지원 등

※ 업무 상 필요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이후 **성과가 탁월한 경우**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4)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 「청소년복지지원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임기제공무원 업무처리 지침」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연령 : 만 20세 이상

❍ 성별 :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지역) : 제한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바.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채용분야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①과 ②를 동시 충족하여야 함

①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의한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채용분야	자격기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1급 5)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비고>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의한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채용분야	자격기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장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비고> 1. "청소년 관련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육성·활동·복지·보호 등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9항에 따라 설치된 전문기관에서 상근으로 수행하는 상담업무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정책 관련 행정업무

1)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5항)

2)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함

3) 전임근무(8시간/1일)가 아닌 경우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예시:주20시간근무),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4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7급(상당)	62,675	**44,514**

※ 연봉 외 급여(각종 수당)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21. 4. 23.(금) ~ 4. 27.(화), 3일간	**2021. 5. 6.(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www.suseong.kr) 게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으며 조정될 경우 별도 통보

■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관련분야 근무경력 평가 등

- 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수성구 홈페이지(www.suseong.kr)에 공고**

❍ **2차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분야 100점 만점(분야별 20점)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로 평정한 때

- 적격자가 없을 경우(모두 불합격인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www.suseong.kr)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 교부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www.suseong.kr) 시험정보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21. 4. 23. ~ 4. 27. (3일간) (09:00~18:00)

❍ 접수장소 : 수성구청 행정지원과(본관 3층)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주소: 우(42086)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수성구청 행정지원과(인사팀)

※ 마감일 우편접수 시 사전 유선연락(☎053-666-2234)

※ 우편접수 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7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별지서식 제1호)

❍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2호)

- 사진 미부착(별도 1매 제출)
- 응시수수료 : 수입증지(7,000원)를 본관 1층 민원여권과 3번 창구에서 구입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 이력서 1부(별지서식 제3호)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 중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3매)(별지서식 제4호)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5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6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7호)

❍ 전문학사 이상 졸업증명서 전체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

- 임용예정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는 학위논문요약서(별지서식 제8호) 제출

❍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1부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재직기간, 직위,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되 증명서 발급 확인자 및 서명, 연락처 기재

▸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 시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경력(재직)증명서만으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서식 제9호)** 추가 제출(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불인정)

❍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10호)

8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최종결과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서류전형에 합격자가 있더라도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 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 경력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는 번역 공증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수성구 홈페이지(www.suseong.kr)에 공고합니다.
- ❍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과 청소년팀(☎053-666-4241), 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과 인사팀(☎053-666-22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직무기술서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직류)	선발예정인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장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대구광역시수성구	문화교육국 교육지원과

주요업무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 전반 - 상담사업, 교육지원 - 위기청소년 지원 - 청소년안전망 운영 등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업무 전반 - 사례발굴 및 관리. 학업지원 -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 복지지원 등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공복의식), **조직이해능력(조직체제이해능력)** ○ **(직급별 역량)**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상담사 윤리, 컴퓨터활용능력 ○ **(직렬별 역량) 판단력(위기사례확인 여부),**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 기본적인 청소년상담 업무 수행 ○ 기본적인 학교 밖 청소년 업무 수행 ○ 지역사회기관 의뢰 체계를 적극 활용 ○ 청소년 사례 통합 관리 운영 등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장

자격기준

※ ①과 ②를 동시 충족하여야 함(각각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

구분	자격기준
①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의 장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1급 5)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구분	자격기준
②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우대요건	사회복지사 2급 이상